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화성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김근범 산림휴양과장)

가. 제안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성시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 및 기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 및 입장·이용제한에 대한 사항(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
- 사용예약의 방법과 화성시민 우선예약 기준 마련(안 제6조)
- 자연휴양림의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을 정함(안 별표 2,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조성하여 운영 예정인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의 조성 근거, 위치 및 입장료에 대한 사항,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운영, 이용신청방법, 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료 기준,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화성시민의 일정범위 내 우선 예약 조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

- 다.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이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라. 다만, 수도권 인근으로 위치 및 교통 등 접근성이 좋고,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타시군 가족단위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 자체예산 약240억원이 사용되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50% 밖에 되지 않아 실제 우리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와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건 아닌지,
- 마. 그리고, 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기준 중 성수기 이용예정일 당일 최소가 10% 반환인 것과 비교할 시 비수기 이용예정일 당일 최소일 경우 70%를 반환해 주는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또한, 자연휴양림 인근 도로통행으로 인한 소음대책은 철저히 준비가 되었는지,
- 바. 마지막으로,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어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실제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인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 이 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김상수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김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나. 주요내용

- “접지이익”(接地利益), “맨발 산책로”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 가. 본 조례안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접지이익 등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다. 다만, 도시공원 등에 조성되기 때문에 먼지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 장소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기 때문에 돌맹이, 나뭇가지, 유리조각 등으로부터 맨발 산책로가 상시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지,

라. 또한, 맨발이거나 더더욱 걱정되는 반려동물의 출입과 그에 따른 배설물 등으로 인한 오염 등으로부터 도시공원의 맨발 산책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 이 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화성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최병주 공원조성과장)

가. 제안이유

- 모범납세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타 시민 관람객을 확대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꽃식물원 운영 활성화를 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꽃식물원 관리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

나. 주요내용

- 모범납세자 입장료 면제 사항 추가(안 제9조제1항제18호 신설)
- 입장료의 감면 사항 추가(안 제9조제2항제1호 및 별표)
-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소관부서 변경으로 인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꽃식물원 관리 소관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모범납세자 입장료 면제 추가 및 입장료 감면 대상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단체의 임직원에게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입장료를 면제하고,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우리꽃식물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다. 다만, 입장료 일부 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연간 3,500만원으로 시 전체 세수에 비해서 크지 않기에, 무료입장을 통해서 97만 화성시민 누구나가 입장료 부담 걱정 없이 식물원을 즐길 수 있고, 무료 입장에 따른 관람객 증가로 부대시설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이 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김상균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김상균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

나.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등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시민의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 가.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 및 충전소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다. 다만, 조례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갈등 및 피해는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무단방치 등의 부작용 등을 슬기롭게 대처할 방안은 사전에 마련된 것인지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이 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김상수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김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야간 운행 활성화를 제고하여 야간에 택시승차난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야간”, “인센티브”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택시운송사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부정수급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특정 시간대에는 특히 야간시간에 택시 이용수요에 비하여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불편이 있는바, 택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21시부터 24시까지 야간시간 운행하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택시 운행 활성화를 제고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나.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제8조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 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인센티브 등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자의 협조 사항, 자료제출 요구 및 부정수급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등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 라. 다만, 인센티브 지원으로 곧바로 택시 이용 불편이 해소되지는 않는바, 인센티브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야간시간만이 아닌 주야간 시간 모든 장소에서 택시 승차난 없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는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 마. 또한, 조례 제정 후에 인센티브 지원기준, 지원금액 그리고 이를 증빙할 자료 등 꼼꼼히 준비하시어 조례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바. 이 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장철규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유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통소통대책”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교통소통대책 검토 및 보완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교통소통대책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 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서 규정된 별표 2에 따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기에,
이에 따라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와 보완요청에 관한 사항,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도로점용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우선적으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 확보가 기대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9. 화성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 3. 9.

다. 상 정 일 자 :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3. 23.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이상만 도로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건이며, 이로 인한 공공질서 저해 및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자전거등록 활성화 및 방치자전거 처리제도를 보완

나. 주요내용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 구체화(안 제12조의2)
- 자전거 등록 및 등록자에 대한 혜택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등록 활성화 및 방치 자전거 처리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의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폐기 또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을 구체화하고 자전거 등록 및 등록자에 대한 혜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